

21세기 일본의 국력과 평화헌법: 평화헌법 논쟁과 정치적 의미

정정숙

서울대 국제지역원 연수연구원

2차 세계대전 이후 공포된 일본의 현행 헌법은 세계의 어느 국가 헌법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전쟁의 방기(放棄), 전력(戰力)의 불보지(不保持), 교전권(交戰權)의 부인’이라는 이른바 영구적인 평화국가를 지향한다는 제9조의 조항을 유래없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헌법’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평화헌법의 배태과정사를 약술하고, 이 헌법과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는 일본 정계의 개정론과 호헌론을 대별하며 이렇듯 간헐적으로 가열되었다가 식곤하는 헌법논쟁의 정치적인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평화헌법이 일본국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과학하고자 한다.

21세기의 국제질서를 주도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일본 여당의 보수주의자들로서는 1980년대 이후 경제대국 일본의 경제력 수준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군사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평화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현행 평화헌법의 존재가 ‘국제공헌’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하고 개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의 해석과 운용만을 통해 ‘자위대법’, ‘유엔평화유지활동법’ 등으로 1990년대 이후의 국제적 요구들을 수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헌법의 유지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 지원이 따르고 따라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편승론에 대하여 미국의 빛좋은 개살구적 보호막을 벗어던지고 명실공히 자위권을 지니는 독립적 민족국가형성이라는 지상과제를 강조하며 일본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정서에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은 이 평화헌법을 개정할 경우 첫째, 평화국가라는 국제적 상징-아시아 주변국은 물론이고 경쟁적인 선진국들의 군국주의적 일본의 재발현에 대한 경계에 대처할 도구-을 상실하고, 둘째,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여받을 수밖에 없었던 평화헌법 소지국이라는 정체성을 잃각하여 피해자로서 대외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도구적 합리성을 상실하며, 셋째, 특정시기에 일본 국민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축발함으로써 대내 통합과 현 내각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기제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일본의 평화헌법은 국력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국력을 지탱할 수 있는 근원적인 요소로 자리매김되는 것이 타당하다. 궁극적으로 21세기에도 일본의 평화헌법을 둘러싼 정치적인 논쟁은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정책 결정의 시기에 활성화될 것이지만 당분간 평화헌법의 평화지향조항이 개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듯 단순한 국내 제도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의 구비야말로 국제적 제도가 국가간 협력을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한다고 보는 신자유주의적 국제시스템하에서 생존자체가 절실한 약소·개도국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I. 서 론: 21세기의 국제체제와 기존의 국력개념

현실적으로 불가시적 국력이라고 하는 것-헌법, 제도, 문화 등-은 말 그대로 눈에 혹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어서 국력개념 혹은 국력의 요소로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문화수준이 그 국가의 수준과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며 국력 그 자체라고 외치던 문화관련 당사자들도 정작 20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문화산업-즉, 영화, 음반, 서적, 회화작품의 상품화-의 산물로서 한편의 작품이 획득한 흥행료, 수익료를 통계수치로 제시하면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과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사례는 불가시적 국력의 인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산업의 본질적인 근간이 되는 문화적 능력은 일시적으로 생산 혹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안에서 서서히 혹은 장기적으로 숙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적인 경제력으로 보상되기 이전부터 국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구체적인 자본으로 환원되는 시점에서 가시적인 국력의 지표로 적절하게 드러난 것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 1945년 패전한 국가로서 미국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지니게 된 평화헌법은 일본 국민들에게도 자신들의 전쟁사를 확고히 인식시켜주는 반면에 평화국가를 지향하는 것을 명문화하였기 때문에 그 전쟁사를 반성할 필요성은 역설적으로 절감시켜주는 기제가 되었다. 일본은 2차대전의 시기에 국가간의 평화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를 전적으로 의심하도록 평화에 대한 냉소성을 확산시키는 주력국이었다. 즉,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평화를 지향한다는 것이 지극히 소극적인 행위이며 현실적으로 무력(無力)과 동의어라는 사실을 무력(武力)으로 증명해준 군국주의 국가였던 것이다. 그러한 일본에 있어서 평화헌법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국가로서 재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보유할 수 없도록 제재적 성격을 지닌 평화헌법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평화헌법은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인가? 아니면 여전히 대외적, 대내적 국력 요소인가를 평화헌법논쟁을 통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평화헌법의 존속과 개정여부는 정치대국을 지향하는 일본의 21세기 비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1세기라고 규정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정치 질서는 현재와 어떤 차원에서 차별성을 떨 것인가? 과연 21세기의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은 어떠한 방식으로 성격지어질 것인가? 고도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구가한 국가로서 동경을 받는 선진적 대상으로 여전히 다루어질 것인가? 혹은 국익우선적인 신중상주의적 무역관행 등에 의해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인가? 미국의 지지자 혹은 명실상부한 동맹국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인가? 혹은 미국에 대한 도전자가 될 것인가?

21세기 일본의 정치, 경제적 입지를 중심으로한 의문에 대하여 세계 시스템으로서 국제 사회 속에서 해답을 모색하고 전망하는 거시적인 견해들이 있다¹⁾. 또한 20세기의 국제 정치 역사에서 주도적인 국가였던 미국과 일본의 상호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21세기를 예측한 다꾸보(田久保忠衛)는 20세기 말에 이르러서 미국의 막강했던 수호자적 위세가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세계 각국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정글과 같은 무원칙의 생존 경쟁이 난무하는 세계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伊藤憲一, 1995: 17-28)

따라서, 21세기의 국제 사회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21세기 국제체제시나리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일본의 힘의 양과 질,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국력의 근원에 대한 연구의 당위성이 대두된다. 일본이 21세기에는 어느정도의 국력을 결집하고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단은 분명히 성급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국력에 대하여 현실주의자들의 대부격인 한스 모겐소(Hans J.Morgenthau)는 국력을 특정국가에 소속된 인물들이 타국의 정치인들의 행동과 마음을 지배하는 힘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견해를 대변하는 공식적 정치 지도자들의 외교적 능력을 중시하고 있다(Morgenthau, 1960: 101). 또한 외교력을 가진 국가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지지를 공공 여론을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내부적으로도 효율적인 정책을 추구한다고 보는데, 효율적인 정책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견해가 국력의 근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1) 세계 시스템적 시나리오는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에서 각기 다른 기준에 의거하여 구성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국가를 기본단위로 삼을 경우에 한정하여 논한다.

첫째, 국가간 현실적인 권리배치를 고려할 때 미·소양극체제 붕괴와 유럽의 시장통합 등에 의해 미국·러시아·중국·유럽·일본이라는 다섯 개의 블록 형성에 따른 다극화세계, 두번째의 시나리오는 경제력이 좌우하는 세계체제를 상정하여 테크놀로지, 서비스, 연구개발 부문의 우월성에 따른 경쟁력의 확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력을 구비한 일본을 중심으로한 거대한 권력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형성될 일본패권체제, 세번째는 미국의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와 패권 부활 전망인데, 이 세번째 시나리오의 단적인 근거는 군사, 안전보장면에서 일본이 미국을 압도하고 세계의 리더쉽을 행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경제적인 급성장을 이뤘다고 하지만 일본은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군사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의 시나리오는 정책 협조에 의한 공동 지도 체제로서의 국제 사회가 국가간 상호 의존을 증가시키라는 견해이다. 국가간 협력을 낙관하는 이 견해는 국제세계에서의 행위자로 국가의 단일성을 복원하고 국가가 상호 교류의 증대에 따라 상호 의존은 증대될 것이라고 보는 신자유주의론자들의 주장과 상통한다. 이러한 경우 어느 일국 혹은 일방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지배력을 지니지는 못하게 된다. 豚口 孝, 『現代國際政治と日本』(1991, 筑摩書房) pp.297-320, 佐藤英夫, 『對外政策』(1989, 東京大學出版會) pp.153-159, 田中明彦, 『世界システム』(1989, 東京大學出版會) pp.180-189. 村松岐夫 外 2人, 『日本の政治』(1992, 東京: 有斐閣) 2章 등의 문헌을 참고함.

모든 정치, 지리, 사회적인 변수를 국력의 요소로 보는 후랑켈(Joseph Frankel)은 인구, 지세(地勢), 경제, 군사조직, 심리, 사회적 요소, 국제전략적 지위들을 국력을 결정하는 변수이며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국력과 차별하여 가능성 혹은 능력(Capabilities)으로 본다 (Frankel, 1972: 71-91). 그리고 국력은 물리 영역과는 다르게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부연하여 국력이 일방적이거나 절대적으로 고정된 형태의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국력의 역동성을 암시하고 있다. 게다가 손에 잡히지 않는 국력의 요소로 국민들의 사기(土氣)를 들고 이는 지도자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배경적 힘이 되고 자국가의 우월성을 믿을 때 상승되어나가는 것으로 보았다.

다양한 요인을 국력의 구성요소로 인식하는 측면에서는 클라인(Ray S. Cline)도 예외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략, 군사, 경제, 정치의 강성(剛性) 혹은 약성(弱性)의 혼합으로 국력을 표시하되 부분적으로는 군사력, 군사장비, 인구, 자원, 경제구조, 기술, 재정력, 윤리성, 정치안정성, 의사결정력, 국민의 사기 등이 고려된다고 하였다 (Cline, 1980: 16). 그러나, 클라인은 경제력, 군사력의 각 부문을 세분화했지만 세분화된 가시적인 요소만으로는 한 국가의 힘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그야말로 판별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의지 수준과 국가 전략의 존재 유무까지를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점수화하였다²⁾. 실제적으로 세계 전략을 지니고 있는가의 여부와 국민들의 의지를 관건으로 하여 강대국들의 국력을 표기하였으며 그 상대적인 국력의 평가 결과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시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클라인의 모델은 불가시적인 국민의 의지, 국가의 전략 부문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점수화했다는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³⁾

홀스티(K.J.Holsti)는 잠재적인 국력 비교에 중점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외교와 선전력을 계량적으로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전쟁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잠재요소임을 지적했다 (Holsti, 1977: 170). 그리고 국력의 측정이란 외교정책적 목적에 관계되지 않으면 행해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국력 연구의 현실적인 실용목적을 천명하면서 더 나아가서

2) 클라인의 전략연구가로서의 경험을 국력의 측정 기준으로 활용한 점은 방법론상으로는 국력의 전략적 측면에 대한 '참여관찰'적 태도로 용인될 수 있으며 파이어아벤트(Paul Feyerabend)가 주장하는 자유로운 연구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방법론은 그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지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은 "어떻게 해도 좋다"라는 것이다' Paul Feyerabend, *Against Method: Outline of an Anarchistic Theory of Knowledge* (London: New left Books, 1975) p.296. 물론 파이어아벤트가 기존의 연구의 틀에 얹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방법론으로 연구를 시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으나 이때의 전제 조건은 해당분야에 있어서의 기존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섭렵이 필수이다. 클라인의 경우 국력의 요소인 전략부문에서의 충분한 연구가 축적된 연구자인 만큼 그의 경험은 유의미한 것이다.

3) 한국의 경우, 한반도의 남, 북의 국력을 비교할 때 주로 이 클라인의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황의각, '남북한 경제의 구조와 역량'『남북한 이질화의 현황과 통합모델의 모색』 1995년 8월 25일, 남북한 통합모델 학술회의 제 2분과 발표논문참고.

는 국가의 파워나 영향력을 사용하는 당사자는 정책 결정자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국력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였다 (Holsti, 1977: 168).

국력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일본의 ‘총합 국력’을 측량하고 있다⁴⁾. 일본 정부의 의사를 대표하여 경제기획청 총합기획국이 간행하고 있는 『日本の総合國力』에서는 일본의 국력을 시기별로 개관하여 전전(戰前)에는 군사력이나 통상력, 전후(戰後)에는 국가의 영향력과 국제 공헌도가 중요한 국력 변수라고 간주한다 (經濟企劃廳 総合企劃局編, 1986: 5-7). 전통적으로는 위기에서의 생존능력이 국력이 되지만,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 국제 사회에 있어서는 타국에 대한 영향력과 대외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을 국력으로 간주한다 (經濟企劃廳 総合企劃局編, 1986: 33).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국력의 내용으로 타국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들고 있는데 그 강제력에도 첫째, 외교에 의한 설득, 둘째, 무역과 금융 원조를 통한 국가 제압, 셋째, 경제 봉쇄, 넷째, 군사력 순으로 사용순서를 정하고 있다 (經濟企劃廳 総合企劃局編, 1986: 38).

지금까지 살펴 본 국력 개념에서는 공히 국내 제도가 국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배제하고 있다. 어쩌면 배제하고 있다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구비되어있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국력 요인으로 인정될만한 차별성이 없거나 그 영향력을 가시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지도자들의 의사 결정력이 국력의 한 요소로 감안되듯이 제도 자체가 타국의 지도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한다거나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선호를 증가 혹은 유인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다면 그 제도는 경제력 못지않는 자원으로서의 비중을 지닌 것으로 새롭게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평화헌법은 21세기 일본의 국력의 근원적 요소로서 검토되는 것이 유의미하며, 평화헌법을 둘러싼 논쟁 고찰을 검토의 방식으로 삼아, 그 결과 과연 평화헌법이 일본의 국력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었는지 혹은 국력의 근원적인 자원이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일본 고유의 평화 헌법 형성과 해석의 역사

일본의 모든 국민이 천황의 국체를 받드는 신민(臣民)으로 규정되어있던 구 헌법(明治憲法)⁵⁾에 의거하여 일본은 천황이 지닌 것으로 전제(前提)된 통치권을 전 세계로 확대

4) 經濟企劃廳 総合企劃局에서 간행하는 『日本の総合國力』은 연보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거의 해당년도보다 7-8년 뒤에 출간되고 있다. 국력에 대한 총체적인 확인작업 이후에 간행이 가능한만큼 막대한 확인량이 출간의 지체요인이다. 1995년 8월 필자가 일본현지를 방문했을 당시 1987년의 국력 통계 단행본이 출간된 상태였다.

하기 위하여 전전(戰前)까지 일본의 주변 지역을 식민지로 경영하였다. 이러한 침략적 대외행위는 황국사관⁵⁾에 입각한 일본정치의 지극히 당연한 수순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현법체계하에서 일본에 의해 도발된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국지적인 성격이 아니라 당시 미국을 위시한 서방 민주주의에 적대하는 파시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평양전쟁 이전의 전쟁 종결협정에서 기존의 전승국들이 패전국에게 요구하던 부분적인 배상이나 국토 일부의 할양과는 달리 일본은 세계의 평화를 위협했던 자국의 파시즘적 제도와 관행을 완전히 마멸시켜야하는 극적인 요청을 수리하여야 했다.

신현법의 제정을 주도했던 맥아더는 1946년 2월 4일 헌법제정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有斐閣 編, 1983: 8).

국권의 발동인 전쟁은 폐지한다. 일본은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쟁,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안전을 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전쟁도 방기한다. 일본은 이 방위와 보호를 현재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숭고한 이상에 위탁한다. 일본은 육해공군을 가지는 권능은 장래에도 부여받지 않으며 교전권은 일본군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 원칙에 입각해서 평화헌법은 작성되었으며, 특히 이 신현법의 평화주의는 추상적인 국가이념이나 도덕적인 실천요강으로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전력소지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에 의해 철저히 뒷받침되었다. 즉, 헌법 제2장, 9조인 ‘전쟁의 방기(放棄), 전력(戰力)의 불보지(不保持), 교전권(交戰權)의 부인(否認)’이라는 명백한 헌법조문의 채택을 통해 전적으로 평화주의를 천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당시의 시대상황에 의하여 일본에서는 자주적 헌법 제정운동을 충분히 전개할 수 없었고 지배자로서의 점령군이라는 상부 조직으로부터 수동적으로 허여받을 수밖에 없었다.

헌법이 제정되었던 당시의 정계에서 수용한 일반론은 미야자와(宮澤俊義)설이었다. 미야자와는 신현법의 9조가 전쟁의 포기를 정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신현법은 침략전쟁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전쟁도 모두 포기하는 전부부인(全部否認)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자위전쟁도 하지 않는 철저한 무저항주의가 신현법의 이념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을 소지한 일본은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데 모범이 되어야한다고 역설하였다 (宮澤俊義, 1947; 有斐閣 編, 1986: 120).

5) 구현법의 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3조: 천황은 신성하므로 침범해서는 안된다. 4조: 천황은 국가원수, 통치권을 총감하며 헌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한다. 結城光太郎, ‘國民主權と天皇制’ 伊藤正己 編, 『現代日本國憲法論』, 1978, 丘秉朔 譯, 『현대일본국헌법론』, (법문사, 1983) p.43.

6) 천황을 매개로 일본국가 및 일본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천황은 우주를 다스리는 신의 적자(適者)이므로 세계를 통치하고 지도할 운명을 소지했다는 원초적인 일본 민족 중심적 역사관이다. 사관(史觀)의 내용과 변천상에 대해서는 坂本太郎 『日本の修史と史學』 (至文堂, 1958), 박인호·임상선 역, 『일본사학사』 (첨성대, 1991) pp.223-229를 참고.

『전쟁의 방기(放棄)』에서 요꼬다(横田喜三郎)도 전쟁을 포기하게되는 경우 전쟁의 수단으로서의 군비는 무용지물이므로 군비의 폐지는 당연하고 신헌법의 교전권 포기는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横田喜三郎, 1947).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화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전력(戰力)을 객관적으로 비전력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의 논의가 행해졌으며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존재해왔다. 즉 객관적으로 국내의 치안 유지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 전력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어서 역사적,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제한적인 전력을 일본이 소지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구(舊)토대가 되었다(法學協會, 1953).

이렇듯 자주적인 신헌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이 강화조약을 통해 대외적으로 폐전국으로서의 명예를 벗고 명실상부하게 독립국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 1951년 이후에는 보수정치세력에 의해 헌법의 자주적인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화 헌법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국가의 제도에 대한 단순한 선호나 취향에 의해 좌우되는 것만도 아니고 일본 국내에서만 논의의 쟁점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즉, 일본 고도성장의 요인을 분석하는 세계의 일본 지역 연구가들에 의해서도 평화 헌법의 존재가 일본의 고도성장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주장되고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국력이 축적되는 근원으로 작동했다는 것이다.⁷⁾

III. 정치계의 평화 헌법 가치에 대한 논쟁과 그 정치적 함의

정부는 일본방위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방위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1996년 방위백서에서도 예외없이 평화헌법과 자위권의 관계를 해석개헌론적 입장에서 언급하고 있다(防衛廳, 1996).

헌법 9조의 규정은 주권국가인 일본의 고유의 자위권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론의 여지없이 인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을 소지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된다고 본다. 일본이 전수방위(專守防衛)를 기본적인 지침으로 하여 실력조

7) Chalmers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참고. 1장에서 저자는 인류학적, 경제학적,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고도 성장이 가능하도록 한 원인들을 모색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집약한 후 대립되고 있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제도적 측면에서는 평화헌법으로 인해 일본이 군사력의 구비에 충당할 비용을 경제에 투입함으로써 경제적 번영을 구가했다고 보는 편승론(free ride)을 피상적인 관찰의 결과에 따른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오히려 저자는 1925년 이래로 ‘국가의 부흥’이라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던 일본의 민족주의적인 행정관료들의 효율적인 생산 고취 방식과 지도 그리고 산업 정책의 실천이 일본 고도 성장 즉, 일본 기적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미와(三輪芳郎)의 반론과 펠(Pemple T.J.)의 중립론에 대해서는 염재호, 1994, 「일본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최상용 외 공저 『일본·일본학』, 오름’의 제5장, pp.161-187)을 참조.

적인 자위대를 소지하고 그 정비를 추진하며 운용을 기획하는 것은 헌법상 어떠한 문제도 야기하지 않는다.

자민당정부는 헌법 9조와 관련하여 주권국가 일본은 자위권을 소지하며,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위력을 소지하는 것은 헌법 9조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며 무력행사를 위한 파병은 위헌이라고 해석한다 (佐藤功, 1992: 46)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평화헌법에 관한 이러한 입장은 차치하고라도 교전권, 전력에 대한 논쟁을 필두로 하여 신헌법의 평화헌법 제정 시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평화헌법에 대한 정치계의 논쟁은 네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헌법 9조가 국제법상 주권 국가가 갖는 자위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가의 여부, 둘째, 영구히 방기된 전쟁이 침략전쟁에 국한된 것인가, 자위·제재전쟁까지 포함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 셋째, 전력의 소지 금지항이 모든 전력을 부인하는가, 자위전력을 허용하는가의 문제, 넷째, 교전권이 국가의 전쟁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국제법상 교전자로서의 권리를 부정한 것인지의 여부이다⁸⁾. 이러한 논쟁은 전후 일본 정치사와 미소 간의 냉전이라는 전후의 국제 정치사를 배경으로하여 폐르시아만 사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내부에서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형성된 이후에 제도로서의 존속력은 전후 50년이 경과하도록 개헌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개헌논의의 다양성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자국관과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미래의 일본 정치와 일본의 위상은 설계된다. 그렇다면 이 헌법이라는 최고 상위법이 개헌되느냐 혹은 개헌되지 않느냐의 두 가지 기초 중 어느 한가지가 선택된다는 사실은 곧 그러한 정치행위를 통해서 일본 정계의 향방이 구속됨을 의미하는 바 그러한 향방을 예측하기 위해서 개헌논의의 고찰이 필요하다. 헌법 논쟁의 반추는 논의내용에 대한 선행고찰과 논의진행 역사가 일본 정치계와 어떠한 관련 속에서 구성되어왔는지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유의미해질 것이다.

1. 개헌론(改憲論): 명문(明文)개헌론, 해석(解釋)개헌론, 절차론, 위헌·합법론

『日本改造計劃』에서 오자와(小澤一郎)는 기존의 평화헌법에 덧붙여 제 3항을 첨가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즉, 기존의 두 가지 조항은 평화창출을 위해 활동할 자위대를 보유하는 일, 국제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유엔의 지휘아래서 활동할 유엔대기군을 보유하는 일, 나아가 유엔의 지휘아래 이 유엔 대기군이 활동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첨가희망 조항의 내용이다. 이렇게 자위대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 명문화(明文化)시키

8) 武者小路公秀, ‘平和主義の理念’ 伊藤正己 編, 『現代日本國憲法論』, 1978, 丘秉朔 譯, 『현대일본국헌법론』, (법문사, 1983) p.54.

면 자의적인 해석개헌이라는 우려나 비판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 효과도 설명하고 있다(小澤一郎, 1993: 124).

일본의 평화헌법이 제정된 시점이 폐전후이므로 당연히 헌법에 관한 논쟁은 현대 정치사와 그 궤를 같이한다는 사실을 앞에서도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명문개헌론은 모든 개헌론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일본은 일본이 지킨다’와 더 나아가서는 ‘일본이 국제적인 공헌을 한다’는 이데올로기의 표출로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9조의 1, 2조항의 폐기를 제안하지 않고 있어서 평화 헌법 자체의 가치는 인정하고 있다고 보겠다. 혹은 헌법 가치의 인정보다는 헌법 조항의 폐기라는 극적인 정치전략이 보수화된 일본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는 거부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의 안보투쟁기를 거치는 동안은 사실상 호헌론자들의 주장이 다른 모든 민주주의적인 반체제운동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헌론이 강력하게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개헌론은 1960년대에 일본이 고도성장의 목표를 달성한 후 그 시점에서부터 경제력의 후원하에 일본의 전후 제도적인 유산을 정리, 개혁하려는 정치적인 의지와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

내각헌법조사회에서는 1964년 7월 3일 헌법조사보고서에서 현행 헌법 제 9조항에서도 자위대, 국제연합에의 가입, 일미안전보장조약 등 현재 지니고 있는 방위체제를 인정할 수 있고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소수만을 제외한 다수의 의견임을 명시하고, 위헌을 주장하는 소수자에 대해서 현재 지니고 있는 방위체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헌법 9조를 합헌이 되도록 개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해석개헌에서 한발 더 나아가 명문개헌을 통해 위헌의 소지를 분명히 없애자는 적극적인 입장의 개진이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개헌 논쟁의 촉발은 ‘개헌 논의의 자유’를 주장한 법무대신 오꾸노(奥野)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호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헌법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개헌을 주장한다고 해서 대신(大臣)을 비방하고 관직을 박탈한다면 파쇼다”라는 주장이었다⁹⁾. 이는 이른바 개헌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로서 개헌논의의 자유를 요구한 것이다. 개헌에 대한 논의의 터부화 경향을 타파하자는 취지로 헌법 개정을 반동화, 군국주의화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을 겨냥한 주장이었다.

마쓰시다(松下幸之助)도 “헌법을 고정시키는 것은 천황제를 고집하는 것과 같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헌법도 유연하게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여 개헌이라는 절차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었다. 즉, 개헌의 일 맹이를 논의하기 전에 ‘개헌’이라는 것 자체의 정당성과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어 내용보다는 수속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개헌의 절차론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이는 개헌을 위한 ‘토대만들기’의 일환으로 해

9) 渡邊治, 『現代日本の支配構造分析』, (花傳社, 1988) p.152.

석될 수 있다. 이는 개헌의 논의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개헌을 지도자들이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점차로 인지해가도록 만드는 방편이기도 하였다 (渡邊治, 1988: 152).

개헌론의 주장의 강도로 볼 때 절차론 다음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문장으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헌법의 문장으로부터 추론 가능한 논리를 채택하여 편의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자위대와 안전보장조약 문제를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논리이다. 이는 보수적인 국민들의 헌법 개정에 대한 불안감을 배려한 것이다. 와타나베(渡邊治)는 이를 명문개헌을 강행할 경우 통치의 안정을 손상시킬 위협이 있으므로 헌법은 협행대로 놔두고 사실상 지배층의 의사대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한다 (渡邊治, 1988: 112). 이러한 헌법에 대한 자세가 실질적으로는 개헌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해석개헌으로 칭한다.

한편, 나까소네(中曾根康弘)내각에 대해 ‘꺽기 아니면 개헌’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태도를 지적하면서 일미협조, 안보체제의 견지, 어느 정도의 군비에 대해서는 국민간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헌법을 개정하지 말고 이 콘센서스를 활용해야 한다¹⁰⁾는 제언이 있었는데 이는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호헌을 가장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해석상의 개헌을 권유한 해석개헌론의 일종이라고 하겠다.

평화헌법에 대한 논의들이 위헌인가, 합헌인가의 이분론에 당착하여 국민들과 정치계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고바야시(小林直樹)는 “헌법상은 당연히 없어야 할 자위대이지만 국회의 다수결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존재이다”라고 했는데 이 언급이 위헌·합법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인정하는 해석개헌론의 논리적 원형이 되었다.¹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에 이르러 개헌논의가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그 이유로 군사력을 확대하라는 미국의 압력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즉, 닉슨 독트린,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으로 미국의 대일 군비요구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는 이미 1950년대부터 존재해왔으므로 1980년대에 이르러 개헌논의가 확산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발단으로 볼 수 없다¹²⁾. 물론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인 국제공헌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군사력의 확대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¹³⁾. 결국 이러한 외부의 제

10) 高坂正曉, ‘解説改憲のすすめ’ VOICE 1984년 2월호.

11) 小林直樹, ‘最近の憲法問題’『ジュリスト』1975年, 5月 1日號.

12) 渡邊治, 『現代日本の支配構造分析』, (花傳社, 1988) pp.125-131.

13) 讀賣新聞, 1990/02/11일자, 이갑윤,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대한 국제적 반응”, 『동아연구』 28집, (1994.9), pp.205-228 중 p.215의 해석 재인용. 필자는 미국이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동반 혹은 추종자로서의 적극성 정도를 희망하는 것이며 미국으로부터 자율, 독립적 역할 중대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였는데 그러나 페르시아만 위기 이후와 아시아지역에

한적이고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적인 개정운동에 돌입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동인에 의해서 일본 수권정당이 필요에 따라 개헌을 주장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90년에 이르러서도 자민·공명·민사당은 총 3개항으로 된 ‘유엔 평화협력에 관한 합의 각서’에서도 여전히 첫번째의 합의사항에 ‘헌법의 평화원칙을 견지한다’라는 원칙을 명시하였다¹⁴⁾. 그러나 점차 유엔의 국제공헌 요청에 의거해서 일본은 전쟁비용 분담금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 지원 차원에서 공헌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또한 개헌보다는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1992.6.15일 가결)’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개헌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식조사 결과와 국민들의 여론은 VI장에서 살펴본다.

2. 호헌론 (護憲論)

일본의 민주주의와 평화국가의 수립이라는 대명제를 지향하는 야당 세력과 지식인층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쟁과 군비, 전력의 불소지를 규정한 신헌법 수호의 실천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군사 재무장과 안전보장체제의 재결성에 대한 반대의 국민운동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운동 주도로 이루어진 국민대연합의 호헌운동은 50년대에 개헌운동의 짹이 발아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1954년 1월 15일 ‘헌법옹호국민연합’은 ‘결성선언문’에서 결성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재군비는 국제간의 분쟁을 대화로써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치와 외교의 책임을 방기(放棄)하는 것이고 무력주의를 전제로 하는 행위이다.--중략--헌법을 개악(改惡)하려는 일절의 기도에 반대하고 헌법을 기조로 하는 평화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수호하겠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정당정파(政黨政派), 주의주장(主義主張)을 초월하여 이 국민연합을 결성한다.

1965년 3월 6일에 발족한 ‘헌법개악저지 각계연락회의’는 결성을 위한 호소문에서 헌법의 개악 세력은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부활시켜 전쟁과 반동적인 길을 답습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하며 헌법의 유린에 반대하고 평화, 민주적 조항의 완전 실현을 추구하였다.

1980년 12월 “‘일본은 이대로 좋은가’시민연합(日本はこれでいいのか市民聯合)’은 호소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사회를 분석하고 호헌을 주장했다.

서의 중국의 부상에 따라 그 정책적 조정이 예상될 수 있다.

14) 朝日新聞 1990/11/09일자, 김홍락, “자민당정부와 PKO협력법 입법의 정치과정”, 『동아연구』 28집(1994.9) pp.167-203.

최근의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상황은 우려된다. 단지 정관재(政官財)의 노골적인 우경화만이 아니라 국민의 상당수 특히 젊은 세대들이 현상의 변혁을 희망하지 않고 보수화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일본국주식회사에의 귀속의식에 빠져 위험한 선진국 내쇼날리즘이 오늘날 일본전체를 휩쓸고 있다. 기성 좌익정당이나 노동운동도 상당부분 체계보완물이 되어가고 있다. --중략--우선, 헌법 개악, 핵병기개발, 차위대의 해외파병, 군비증강, 안보체제개편에 대한 저항을 중심으로하고 안보체제폐기, 헌법의 실질화, 일본의 비무장·종 럽을 위하여 제3세계의 민중운동자들과 연대하여 행동해야한다.

개헌론과 호헌론의 주체세력은 양분된 경향을 보여준다. 수권 정당에서는 해석개헌과 명문개헌을 주장하고 국민연합과 같은 호헌집단은 평화를 유지하는 중립국을 지향한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경제 우선적인 외교와 정치를 전개하고 있고 국민들도 개인적인 관심에 몰두하며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호헌세력의 저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평화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호헌 세력은 1950년 이래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IV. 각 정당의 원칙적인 평화헌법관

1. 자유민주당

일본의 자유민주당(약칭: 자민당)은 55년 체제의 성립이래 간헐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일본국의 명실상부한 독립의 쟁취라는 의의와 연계시켜 주장해왔으며 다음과 같이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헌법 9조,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지 규정의 취지는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하(威嚇) 또는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써 무력행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침략전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2항의 교전권 포기는 1항의 침략전쟁 포기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 무력 이상의 전력의 불보지를 의미한다. 결코 국가로서 고유의 자위권까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위권은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급박한 침략이 있을 경우에 국가가 실력으로 방위할 권리로써 국제법 및 국제연합헌장 제 51조 규정에 의해 국가에게 인정된 권리이다¹⁵⁾.

그러나 평화주의는 명백하게 포기되고 있지 않다. 평화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은 1995년 3월 5일에 발표한 ‘자유민주당의 기본방침’ 중 ‘자유민주당의 이념’이라는 총 3항 중 마지막 3항에서 ‘우리당은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 지구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평화를 수호하는 정당이다’라고 집약되고 있다. 또한 이때 ‘자유민주당의 신강령’도 발표되었는데 총 8항 중 첫째 항에서 ‘냉전후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인도

15) 1976년 1월, 제 31회 自由民主黨大會 運動方針, 有斐閣 編, 『憲法第九條』(改訂版) (有斐閣編, 1986) p.103.

적으로 평화에 기여하는 국제공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의 각국으로부터 신뢰받는 품격을 지닌 국제평화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피력하고 있다.

결국 자유민주당은 이념과 강령을 통해 평화를 수호하고 지향하는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그 방법론상에 있어서는 평화헌법이 요구하는 지극히 부동적(不動的)인 자세가 아니라 '세계평화에 적극 공헌하는 평화'와 '평화에 기여하는 국제공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당'을 지향함으로써 적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성은 세계평화의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책도 구사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확대해석될 수 있으며 수권정당으로서 보수적인 개헌론자들의 입장을 추수해갈 가능성이 높다.

2. 사회당¹⁶⁾

일본의 사회당은 호현적 입장을 관철해온 정당으로 헌법 9조를 근거로 1973년 비무장과 평화 중립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여 왔다.

평화헌법은 평화를 애호하는 제(諸)국민의 공정(公正)과 신의를 신뢰하고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소지하자는 결의이다. 이는 헌법 전문(前文)의 비무장의 원리에 대응한 것이다 --중략--모든 국가는 자연권으로서 고유의 자위권을 갖는다. 그러나 이 자위권은 물리적인 전력(무장된 힘)이 아니다. 전쟁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자위권을 수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력의 소지는 헌법 9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사회당은 비무장, 평화중립의 길을 평화헌법의 명(命)에 의해 수호하기를 계속한다.¹⁷⁾

사회당은 1994년에 이르러서는 자민당과 연합하여 정권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자민당과 거의 차이가 없는 입장을 보여주었으며--1955년 체제 아래 단독 정권을 창출해오던 자민당이 1993년 38년만에 단독장기집권에 실패한 뒤, 비자민정당의 연립내각에 뒤이어 사회당과 연립내각을 구성--1996년 10월의 총선 이후 3년 3개월만에 자민당이 단독정권으로 복귀함으로서 사회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입지를 상실하였다. 1996년 사회당은 당명을 사회민주당으로 개칭한 뒤 현재 전통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였으며 분당과정을 거쳐 사실상 사회당의 소멸위에 실제로 새로운 이름으로 정당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민주당은 이후 1997년 5월 3일에는 헌법기념일을 맞이하여 헌법수호와 관련하여 총 4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실시 50주년을 맞아 헌법의 평화주의, 국민주권, 기본적인권 등의 이념은 국민속에 정착되었고, 사민당은 전후 일관하여 이 헌법을 수호하며 발전해왔으며 이 역할을 지속적으로 계승해 나갈 것이다. 세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헌법이 일본의 부흥과 발전에 적극

16) 1996년 전당대회를 통해 당명(黨名)을 '사회민주당'으로 개칭함.

17) 1973년 9월 7일,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有斐閣 編, 『憲法第九條』 (改訂版)(有斐閣, 1986) p.105.

적으로 공헌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 9조를 유지하자는 국민이 다수이지만 신세대 중에는 국제분쟁의 해결, 수상공선체, 국민투표제도, 정보공개, 환경권 등을 위하여 헌법개정의 필요성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제들은 정책적인 것이며 우리당은 기본법의 제정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신세대들의 경향은 보수세력의 헌법개정지향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비록 사회당이 사회주의 노선을 철회하고 자민당과 차별없는 국내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할지라도 위의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1997년에 이르러서도 평화헌법의 호현세력임을 스스로 천명하고 있다.

3. 공명당¹⁸⁾과 민사당

공명당은 1981년 12월, 제19차 당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평화헌법관을 명시했으며 자민당의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헌법 9조의 1항인 ‘영구히 포기한다’의 대상은 첫째, 국권의 발동인 전쟁, 둘째, 무력에 의한 위협, 셋째, 무력의 행사라는 세가지이다. 무조건적인 포기는 아닌 것이다.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이라는 대목은 무력의 행사를 포기하는 전제인 것이다. 협약 하에서는 평화존립을 위한 자위권은 인정된다. 헌법이 용인하는 자위권으로서의 능력은 영해, 영공, 영토의 영역보전에 임무를 한정한 영토 보전 능력이 타당하다고 본다¹⁹⁾.

민사당의 경우도 1981년, 『민사당정책 ハンドブック』에서 자위전과 자위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입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헌법 9조에서 포기한 전쟁은 침략전쟁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위권은 국가의 정당방위권으로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1928년의 부전조약(不戰條約)도 자위전쟁은 침략전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게다가 헌법 제정 시기에 맥아더의 신헌법 초안(note)에 있었던 ‘자위전쟁의 포기’가 원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완전히 삭제된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만일 자위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헌법 전문(前文)에서 표명되고 있는 평화 속에서 생존할 권리와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라는 국가의 책임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有斐閣, 1986: 110).

이렇듯 공명당과 민사당은 자위권을 인정하는 해석개헌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 공산당

일본공산당은 평화헌법과 관련하여 자위를 위한 군비(軍備)를 포함하여 어떠한 전력

18) 1994년 12월, 자민당에서 이탈한 신생당과 호소카와(細川護熙)의 일본신당과 공명당, 민사당이 통합하여 신진당을 결성하였으나 1997년 12월 31일 이 신진당은 오자와(小澤一郎)가 이끄는 자유당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파(諸派)로 정식 해체되어 1998년 6월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 1981년 12월 제 19회 당대회 ‘공명당의 안전보장정책’ 有斐閣 編, 『憲法第九條』(改訂版)(有斐閣, 1986) p.108.

도 지녀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본국이 중립국으로 성숙하게 될 경우 세계의 평화를 위해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고려한 최소한의 자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총의에 의해 결정한다고 하여 일본의 정치적 평화국가 수준도 고려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었다.

현행 헌법은 제 9조에서 자위를 위한 군대를 포함하여 국가의 어떠한 전력도 금지하고 있다²⁰⁾. 평화와 중립의 일본은 현헌법의 원칙을 따라 군대를 갖지 않는다. 평화정책과 독립옹호의 국민으로 단결하여 중립의 국제적 보장에 의해 안전을 수호하자. 장래 일본은 국민 다수의 지지에 의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완전히 타파하여 독립, 민주, 평화, 중립의 길로 나아가고 일본의 사회가 전진한 뒤에는 일본의 독립, 중립에 대한 침해를 배제하는 중립국으로서 국제법상의 의무를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위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의 총의를 기본으로 삼아 헌법상의 처리를 결정한다²¹⁾.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필요최소의 자위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였던 일본공산당은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강력하고 유일한 호헌정당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그들의 기관지인『赤旗』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다.

헌법시행 50년이 경과한 지금 헌법은 전후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자민·신진·민주·태양·사카가케 정당 등의 의원들에 의해서 ‘헌법조사위원회설치추진의원연맹’이 설립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개헌의 발의권을 지닌 유일한 기관인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족되었기 때문이다. 개헌책동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공산당은 헌법개악(改惡)과 군국주의의 전면부활을 저지하고 헌법의 평화·민주적 원칙의 완전 실시를 추구할 것이다²²⁾.

이렇듯 대부분의 정당들이 수권정당을 중심으로 보수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차별적 정책과 원칙을 제시하는 정당으로서, 공산당은 사명의식을 거론할 만큼 강경한 호헌론을 천명하고 있다.

V. 각 정당의 평화 헌법관에 입각한 안전보장과 자위력 이해

지금까지 살펴 본 원칙적인 일본 정당들의 평화헌법관이 구체적으로 안전보장 조약, 자위력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비교해 본다.

20) 『赤旗』, 1968년 6월 11일, ‘일본의 중립화와 안전보장에 관하여 일본 공산당의 구상’

21) 1981년 5월 ‘국정 선거에 직면한 일본공산당의 정책세목’ 有斐閣 編, 『憲法第九條』(改訂版) (有斐閣, 1986) p.113.

22) 『赤旗』, 1997/08/03 일자, ‘일본공산당 제21회 대회 결의안’.

| 정당 | 연도 | 안전보장 | 자위력 |
|--------|---------------|-----------------------------------|--------------------------|
| 자유민주당 | 1976 | 일본국이 자위력으로서 자위대와 안전보장체계 지님 | 자위력은 국가 고유의 권능. |
| | 1983 | 일미안보체계가 안전보장의 골격, 미일군 합동연습 활성화 | 미연방지, 억지에 초점. |
| | 1998 | 미일안전보장체제 견지 | 전수방위, 국제공헌 자위대 파견. |
| 사회당 | 1971 | 적극 중립의 평화외교, 일미안보조약 철폐 | 자위대 평화적 전용. |
| | 1980 | 비무장중립은 이상론이 아님 비동맹 적극 중립외교 | 자위대 축소, 군사비삭감. |
| | 1998 (사민당) | 국제연합 중심 안전보장체제 | 한정방위 철폐, 비군사적 평화유지활동. |
| 공산당 | 1973 | 일미안보조약 폐기 | 위현자위 대해산. |
| | 1980 | 일미안보조약 폐기 | 자위대의 해산. |
| | 1997 | 일미안보조약 폐기, 비핵, 비동맹, 중립 원칙 | 자위대 무기 사용 금지. |
| 공명당 | 1972 | 일미안보 조기 해소 등거리 완전 중립외교 | 필요최소한 국토 경비 필요. |
| | 1983 | 일미안보조약의 운용에 주의 | 전수방위 필요. |
| 민사당 | 1977 | 일미안보조약 기능인정 | 최소자위 필요. |
| | 1983 | 총합안보 추구, 식량, 자원, 동력의 안정 확보. | 억지력 강화. |
| 신당사키가케 | 1998 | 일미안보조약 중요성 재확인 | 국제정세 대비 효율적 방위 정비. |

자료: 1. 有斐閣 編, 『憲法第九條』(改訂版) (有斐閣, 1986) pp.103-120을 참조.
 2. 1980년대까지의 자료는 1986년에 간행된 1항의 자료를 참조했으며 1990년대 자료는 각 정당 정책의 기본과제, 방침, 각 정당별 당대회 결의안, 총재의 대회사 등을 참조하여 구성하였음.

1970, 80, 90년대의 일본 정당들의 헌법관에 입각한 자위대와 안전보장문제를 보는 시각을 정리해 본 결과 자위대의 설치와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

던 일본의 수권 정당인 자민당은 미일안전보장조약과 자위대의 기능을 역설하고 이 두 가지의 이슈에 대한 헌법의 구속은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침략전쟁을 도모하기 위한 전력의 구비가 아닌 자위적인 전력은 국민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의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점에 있어서 일관적이다. 그리고 침략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미리 억지하기 위한 억지책을 중시하여 미일 간의 군 합동연습의 활성화를 기도한다.

이러한 논리는 ‘군대 그 자체가 평화를 파괴하고 광기를 부리는 집단은 아니다. 다만 전쟁이 광기를 호소하고 부여한다’²³⁾고 하는 전쟁책임의 양자론 혹은 회피논리로 전쟁의 주체보다는 전쟁의 구조적 성격만을 강조하는 격이다. 구조적으로 광기를 냉는 전쟁 자체를 억지하기 위하여 일본은 자위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당은 자위대의 해체를 주장해왔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 해체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되 현실적인 자위대의 면모를 감안하여 그의 축소를 방침화한다. 그러나 1996년 사회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칭하는 시점에서 자위대의 최소한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최근에 다시 한정적인 전력의 철폐 입장을 보여주고, 비군사적인 부문에서만 국제공헌을 할 것이며 국제연합차원에서의 안전보장을 추구하고 있다.

공산당만은 일관하여 일미안보조약의 폐기와 자위대의 해체를 주장해왔다. 게다가 일미안보조약이 폐기될 경우 일미 관계는 동결이나 적대 관계가 아닌 상호 호혜와 평등한 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전망을 지니고 있다. 20세기 말에 이르러 국가간에 상호의존적인 동시에 분명하게도 국적에 입각한 군사력의 확충과 경제적 관행이 지배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중립을 통한 상호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의 수립은 이상론에 치우친 것이며 이러한 공산당의 평화관에 입각한 안전보장조약관이나 자위관이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민사당은 사회당에서 분리되어 창당할 때 현실적인 일미안전보장조약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겠다는 명분을 표방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합당하게 자민당과 거의 동일한 자위관과 안전보장조약관을 지니고 있다.

공명당은 70년대에는 초기에는 중립주의를 지향하였으나 80년대에는 전수방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미안전보장조약의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수용, 단지 그 운용면에 있어서의 주의를 요망한다. 이러한 공명당의 정책은 자민당과 그 노선을 같이 하고 있어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도 하다.

23) 小林孝輔, 『戦後憲法政治の軌跡』, (勁草書房, 1995) p.84.

VI. 일반국민과 국회의원들의 평화헌법과 안전보장에 대한 의식

현실적으로는 1980년대까지는 약 50%를 점하는 과반수의 국민들이 미국의 군사안보 체제 특히 1960년대 이후 미국의 핵우산하에서의 안전보장을 바라고 있다.

| 지지 내용 | 1969(년) | 1972(년) | 1975(년) | 1978(년) | 1981(년) |
|-----------------------|---------|---------|---------|---------|---------|
| 미일안보조약파기/ 자위력을 강화 | 13 (%) | 11 | 9 | 8 | 6 |
| 미일안보조약유지/ 자위력으로 안전방위 | 41 (%) | 41 | 54 | 61 | 65 |
| 미일안보조약파기/ 자위대도 축소, 폐지 | 10 (%) | 16 | 10 | 5 | 7 |
| 모르겠다 (기타 1% 포함) | 35 (%) | 31 | 26 | 25 | 21 |

자료: 최경락, '여론조사로 본 일본의 안보관',『국제문제』1983. 8월호, pp.114-115. 국제평화연구소 편,『세계평화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경희대학교 출판국, 1984) p.151 참고.

*상기 자료는 1983년에 간행된 관계로 1960-1980년대까지를 범위로 했으며, 따라서 1980년대의 여론조사결과를 살펴본 이후에 본 장(章)의 후반부에서 1990년대의 국민의식을 비교 고찰할 수 있는 1997년 4월 读賣新聞 자료와 분석이 뒤따름.

그리고 또한 헌법 문제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국민들의 여론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朝日新聞, 1983/02/21).

- 일반인 대상:

-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30%
개정 논의가 불필요하다. 49% (이들 중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비율이 76%)

- 당시 내각 지지자 대상:

- 개정논의 필요하다. 39%
개정논의가 불필요하다. 44%

마이니찌 신문에서 행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평화에 대한 건강한 헌법 감각이 국민의 의식속에 구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毎日新聞, 1983/03/01).

- | | |
|-----------------------------|-----|
| 개헌을 전제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 24% |
| 논의는 어쨌든 개헌은 급하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 45% |
| 개헌은 논의를 포함해 반대한다. | 20% |

이러한 여론 조사는 표본의 적정수, 지역적 포괄성, 다계층과 다세대의 고려 여부에

의해서 그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으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공통점은 발견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 일반 국민들은 평화 헌법에 대하여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개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즉, 일본의 안전보장은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명문 개헌보다는 해석 개헌을 통한 헌법의 융통성있는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1980년대까지는 헌법의 개정이 비현실적인 정치시위성 안건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고 있었다고 보겠다.

1997년 3월 30일, *讀賣新聞*에서 발표한 개별의원 의식조사의 결과 헌법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주요정당별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²⁴⁾. 이 결과는 정당의 강령이나 방침과는 독립적으로 의원 개개인에게 질문한 결과이다.

| 정당 | 헌법9조 개정 찬성율 (%) | 자위대 합헌론 찬성율 (%) | 정당 | 헌법9조 개정 찬성율 (%) | 자위대 합헌론 찬성율 (%) |
|-----|-----------------|-----------------|------|-----------------|-----------------|
| 자민당 | 56 | 81 | 사민당 | 0 | 6 |
| 신진당 | 51 | 88 | 태양당 | 46 | 73 |
| 민주당 | 9 | 47 | 사끼가께 | 0 | 60 |
| 공산당 | 0 | 0 | 공명 | 22 | 89 |

자료: *讀賣新聞*, 1997/03/30 일자.

이러한 통계와 헌법9조와 관계된 여타의 응답내용을 보면 현행헌법의 역할에 대해서는 79.6%의 의원이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다수의 의원(97%)들이 헌법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62.3%의 의원들이 1990년 말의 시점에서 헌법의 해석이나 운용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위대를 합헌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의원은 68.7%를 차지했다. 그러나 자위대가 합헌이라면 굳이 현행헌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때 의원들의 이런 의식은 모순을 낳는다.

각 정당별로는 보수성이 강한 수권정당과 여권연립을 추구하는 정당들이 개정찬성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공산당과 사민당의원들은 호현론적 입장을 그대로 드러내주었다. 특히 전신이 사회당인 사회민주당과 공산당 의원의 경우 헌법개정에 대해서 ‘일본 헌법은 세계에 자랑할만한 평화헌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4) *讀賣新聞*, 1997/ 03/ 30 일자, 일본 전체 국회의원 752명 중 564명이 응답했으며, 자민당 171, 신진당 144, 민주당 47, 공산당 39, 사민당 16, 태양당 11, 공명당 9, 사끼가께 5, 그외 23명이다.

1997년 4월 6일, 讀賣新聞에서 발표한 국민들의 의식조사 결과에서는 의원들과 유사하게 현행헌법의 역할을 76.2%의 국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헌법의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국민이 75%였다. 단,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44.9%만이 찬성하고 있어서 의원들의 의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²⁵⁾.

VII. 결 론: 가시적 국력의 거품화를 예방하는 국력의 근원

평화주의라는 이념 지향과 자위가 필요한 독립국으로서의 자존심,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국제공헌과 그에 따른 존경심 획득이 대외적으로 일본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이다. 평화주의는 헌법 자체의 영구평화의 논리와 정치 현실 사이에서 편향적으로는 시련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개헌이 주장되고 있을 뿐 헌법개정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모색한 흔적은 없다. 단지, 헌법의 범위내에서 자위대법, 평화유지활동 협력법만이 통과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1997년 국민과 의원들의 의식조사에서와 같은 개헌찬성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헌법이 개정될 경우 첫째, 평화국가라는 국제적 상징-아시아 주변국은 물론이고 경쟁적인 선진국들의 군국주의적 일본의 재발현에 대한 경계에 대처할 방어벽-을 상실하고, 둘째,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여받을 수밖에 없었던 평화헌법 소지국이라는 정체성에 입각하여 피해자로서 대외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도구적 합리성을 상실하며, 셋째, 특정시기에 일본 국민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촉발함으로써 대내 통합과 현내각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기제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본의 주변국들은 아직까지도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착취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의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만일 평화헌법을 개정해 독립적인 군사력을 구비한 군사대국인 일본과 접촉해야 한다면 신뢰가 상당한 정도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상호 협조나 국제적 관행이라는 절차에 의존한 관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캘더(Kent Calder)는 일본을 ‘수동적(반사적)인 국가(Reactive state)’라고 파악하였다.²⁶⁾ 정책 변화에 대한 자국이 내부적인 동인에 의해 주어지기보다는 외부 압력으로부터

25) 讀賣新聞, 1997/04/06일자, 대 국민여론조사는 1997년 3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전국의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개별방문면접청취 형태로 실시되었다. 국민과 의원들과의 괴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는 1998년 1월 22일 新日本婦人の會에서 발표한 ‘8만인 여성의 要求양케이트’결과가 있다. 양케이트 문항중 헌법9조를 다룬 6번 질문형 ‘금년(1997년)은 일본국 헌법이 시행된지 50주년이다. 전쟁의 포기를 명시한 제9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1997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회수된 전국 77,556명 여성의 응답내용에서는 반대 68.9%, 찬성 7.5%로 압도적으로 반대율이 높았다.

26) Kent Calder, ‘Japanese Foreign Economic Policy Formation’ *World Politics* (1988) 특히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 일본이 외압이 있을 경우에만 변화를 시도한다고 하였는데, 이 캘더의 시각이 일본 대외경제정책을 설명하는데 있어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압의 역할을 너무 강조한

주어진다는 분석에 의거한 일본국에 대한 규정이다. 일본이 후발국으로서 선진국들과는 차별성있게 상황에 민감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듯이 긴장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이는 일본을 제외한 상황주도국, 상황연출국이 있다는 전제가 성립될 때 가능한 설명이다.

만일, 일본의 고유한 성격으로 이러한 긴장성을 인정한다면 일본은 고도성장기를 거쳐 이미 경제대국이 된 현재에도 주도적인 상황형성국이 되기보다는 상황추수국이 될 확률이 비교적 높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평화헌법의 개정은 일본 의회 자체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설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의회 내부의 필요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외부의 압력을 고려한 결과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본의 정치 지배층은 평화헌법 개정의 문제를 그 절차에서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소 간헐적인 단절만을 제외한다면 거의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국의 개정 압력이 있었지만 선뜻 응하지 않는 정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군사비를 감축하고자 하는 미국에 의해서 압력을 받고 있는 일본의 평화헌법은 지금까지의 일본의 역사를 감안할 때 일본의 현 정권이 난국을 타개하는 방편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만일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독립헌법쟁취 기념일’로 기념하는 기념비적 정치 행사가 기획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평화헌법의 안전벽적 기능 혹은 기존 국력의 토대가 사라지고 난 뒤에 일본의 독자적 헌법이 담당해야될 부담은 어느 수준일까? 지금까지도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주둔군의 물자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위지출금의 50%²⁷⁾를 일본이 배려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해왔던 만큼 경제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이 정치 권력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끊임없이 경제세력으로 존재함으로써 정당의 존속 이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평화 헌법을 통한 개정과 존속의 논의가 일본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제도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주고 국가 자체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주었다. 특히 21세기 국력은 경제, 군사력과 함께 인간 개별적인 자질이며 자원인 협의력도 중시될 것이기 때문에 협의(協議)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소재를 소지한 일본은 하나의 국력 요소를 거쳐 지녀온 셈이 된다. 따라서 경제력을 수반한 국가로서 경제적인 불안 요인들의 현실화에 의해, 그 경제력에 기반한 국력이 저하된다고 할지라도 협의력과 국가에 대한 관심은 국력의 또 다른 동인으로 전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머지 실제로 일본 대외경제정책이 이슈의 성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진 점은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태현·유석진·정진영 편『외교와 정치』(오름, 1995) pp.157-161 참고.

27) 山田浩,『戦後アメリカの世界政策と日本』(法律文化社, 1967) p.217. 정구종, 'GNP 1.5%, 세계 3위의 일본군사비, 『일본평론』 1990년 (창간호) pp.102-131의 p.115에서 재인용.

일본의 국력을 축적하고 활용해온 역사적인 과정에서 평화헌법이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요구에 대하여 협상의 카드로 사용된 제도적 기제이며 수권 정당인 여당이 이 평화헌법의 개헌을 주장하여 간헐적으로나마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자국의 존립 방식에 대한 관심을 경주하도록 하는 결과를 창출해왔기 때문에 일본의 헌법 9조는 그 자체가 가시적인 국력이라고는 결코 주장할 수 없지만 국력의 한 토대로 충분히 작용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홍락. 1994. 「자민당정부와 PKO협력법 입법의 정치과정」. 『동아연구』 28집. pp.167-203.
- 이갑윤. 1994.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대한 국제적 반응」. 『동아연구』 28집. pp.205-228.
- 猪口 孝. 1991. 『現代國際政治と日本』. 筑摩書房.
- 佐藤英夫. 1989. 『對外政策』. 東京大學出版會.
- 田中明彦. 1989. 『世界システム』. 東京大學出版會.
- 村松岐夫 外 2人. 1992. 『日本の政治』. 東京: 有斐閣.
- 經濟企劃廳總合計劃局 編. 1986. 『日本の總合國力』. 大藏省 印刷局.
- 吉田善明. 1979. 『現代憲法の構造』. 効草書房.
- 渡邊治. 1988. 『現代日本の支配構造分析』. 花傳社.
- 伊藤正己 編. 1978. 『現代日本國憲法論』. 丘秉朔 譯. 1983. 『현대일본국헌법론』. 법문사.
- 杉原泰雄. 1980. 『80年代憲法政治への序章(上)』. 効草書房.
- 和田英夫. 1991. 『現代憲法の體系』. 効草書房.
- 森英樹 外 2人. 1993. 『政治改革への 提言』. 岩波書店.
- 安江良介 外 2人. 1994. 『戦後 50年』. 信濃毎日新聞社.
- 山口二朗. 1995. 『政治改革』. 岩波新書.
- 司馬遼太郎. 1972. 『日本人と日本文化』. 中公新書.
- 松下圭一. 1994. 『戦後政治の歴史と思想』. 學藝文庫.
- 村川一朗. 1994. 『日本の官僚』. 丸善株式會社.
- 經濟企劃廳 總合企劃局 編. 1986. 『日本の總合國力』. 大藏省 印刷局.
- _____. 1987. 『繁榮の哲學』. 大藏省 印刷局.
- 龍円惠喜二. 1994. 『日本政治變動論』. 北樹出版.
- 伊藤憲一. 1995. 『21世紀世界への道案内』. 三田出版會.
- 小林孝輔. 1995. 『戦後憲法政治の軌跡』. 効草書房.
- 朝日新聞論說委員室編. 1995. 『國際協力と憲法』. 朝日新聞社.
- 全國革新懇談會編. 1993. 『憲法と日本の進路』. 全國革新懇談會.

- 有斐閣 編. 1986. 『憲法第9條』(改訂版). 有斐閣.
- _____. 1995. 『法學教室』. NO.179. 1995年 8月號.
- _____. 1995. 『ジュリスト』. NO.1073. 1995年 8月1日-15日號.
- _____. 1995. 『憲法判例百選』. NO.131. 1994年 10月號.
- 藤原彰 外 2人 著. 1986. 노길호 역. 1991. 『우리가 알아야 할 일본의 현대 역사』. 명진출판.
- 宮澤俊義. 1947. 『あたらしい憲法のはなし』. 朝日新聞社.
- 佐藤功. 1992. 「第9條の政府解釋のきせきと論点」『ジュリスト』. NO.1011.
- 讀賣新聞. 1990/02/11. 1997/03/30. 1997/04/06日字.
- 朝日新聞. 1990/11/09日字.
- Cline, Ray S. 1980. *World Power Trends and U.S. Foreign Policy for the 1980s*.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Frankel, Joseph. 1972.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Grieco, M. J. 1988.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3). pp.486-507.
- Holsti, J. k. 1977. *International Politics*. Prentice Hall Incorporation.
- Kennedy, Paul. 1987.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New York: Random House.
- Morgenthau, Hans. J. 1960.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 Vogel, E. F. 1986. "Pax Nipponica?" *Foreign Affairs*. 64(4). pp.752-762.

JAPANESE NATIONAL POWER AND THE PEACE CONSTITU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DISPUTE ABOUT THE PEACE CONSTITUTION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Jeong-Sook Chung

*Graduat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Japanese constitution, which came into force at the end of the World War II, has been called "Peace Constitution" on account of the following peculiar phrases in chapter II of the constitution: "the renunciation of war, of war potential, of belligerency." Such phrases have never been seen in any other constitution in the

world.

Conservative politicians in Japan who have tried to take leadership for the 21st century have consistently advocated and insisted on a revision of their constitution, because Japan's military power level has not caught up with its economic affluence. Until now, Japan's military power could not easily be developed or increased, nor could Japan offer any contributions internationally to help a nation which has needed military support from Japan, because of the present peace constitutional system.

There are three main parts to this paper. The first part deals with the historical formation(procedure) of the Peace Constitution. The second part delineates the dispute between those who support and those who oppose the constitution. Lastly, the conclusion finds a renewed function for the Peace Constitution in Japan.

If the constitution is changed,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lose three important instruments from that time in Japan. First, the symbol of peaceful nation and the effects of having a peace clause in the Japanese constitution will cease to exist. Second, Japan will lose a key rationale for its identity as a loser which was formed by allied powers after World War II and which has been utilized by Japanese politicians to curb excessive demands made by powerful nations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Lastly, Japan's ruling party will no longer have the constitutional mechanism which has been operating to urge to unificate the Japanese people with emotion of nationality during times of difficulty in Japanese politics.

In conclusion, the Peace Constitution of Japan is a kind of potential, invisible and incalculable factor for Japan's national power. Even if the dispute over the constitution will be actualized by politicians sometime in the future, of course, intermittently, the Peace Constitution as a potential element of national power will be not changed for the time being.